

것이 内務部長官 감독으로 바뀜에 따라서 내용 중에 “國務總理의 事前承認을 얻어” 이런 것이 말하자면 “内務部長官”으로 이렇게 바뀐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그 名稱만 바뀐 것이고 특별한 내용이修正된 것은 없습니다.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永和 專門委員 나오셔서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.

(報 告)

서울特別市地下鐵公債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

1. 提案者: 서울特別市長

2. 提案理由

○ “地下鐵道의 建設 및 運營에 關한 法律”이 “都市鐵道法”으로 改正됨으로 이에 따른 關聯條例가 改正 되는 것임.

3. 主要骨子

○ “地下鐵道”→“都市鐵道”(案 第1條 내지 第4條)

○ “地下鐵公債”→“都市鐵道公債”(案 第1條 내지 第5條)

○ “國務總理”→“內務部長官”(案 第2條)

4. 檢討意見

가. 根據 法規

1) “都市鐵道法”이 改正됨 (1991.12.31)

2) “地方自治法 第115條”

3) “都市鐵道法 第12條”

나. 檢討意見

○ 1990.12.31 既存 “地下鐵道의 建設 및 運營에 關한 法律”이 “都市鐵道法”으로 改正됨으로 해서 關聯施行令, 規則, 條例가 改正되어야 하는 것으로 關

聯條例 中 “地下鐵道”를 “都市鐵道”로 “地下鐵公債”를 “都市鐵道公債”로 그 字句를 修正하는 것은 安當하다고 생각함.

○ 地方自治法 第115條(地方債務 및 債券管理)

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必要가 있는 때에는 内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範圍안에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고

○ 都市鐵道法 第12條(都市鐵道債券의 發行)

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鐵道債券의 發行을 위하여 内務部長官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交通部長官과 協議 하도록 規定되어 있음

○ 따라서, 關聯條例 中 公債의 年度別 發行限度額은 “國務總理”的 承認을 얻어 서울特別市長이 정하도록 한 것을 “內務部長官”的 事前 承認을 얻도록 改正하는 것은 安當하다고 생각함.

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永和 지금까지 條例案에 대한 交通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.

다음은 서울特別市地下鐵公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.

質疑와 答辯은 交通局長을 상대로 一門一答式으로 進行토록 하겠습니다.

그리면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시면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.

이건 字句 修正이지요, 字句 修正?

(「네」하는 이 있음)

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상으로 서울特別市地下鐵公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고, 그러